

# 부 의 안 건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 참여 강화·확대 방안  
: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설치를 중심으로

의 안 번 호	2024-04
의 안 종 류	정책제안서 (의견제안)
소 관 위	인권상임위원회
발 의 연 원 일	2024년 9월 21일
발 의 의 원	서예림 의원 등 5명
찬 성 의 원	서예림 의원 등 1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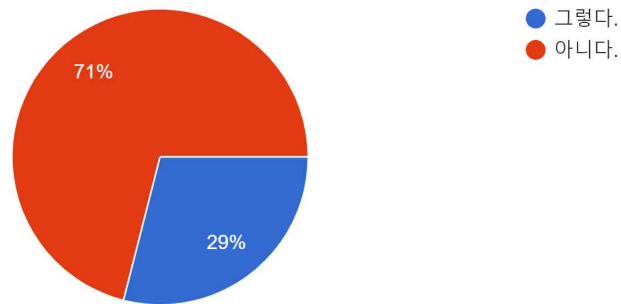
## 고양시 청소년의회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 참여 강화·확대 방안**  
: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설치를 중심으로

**1. 제안배경(환경분석, 제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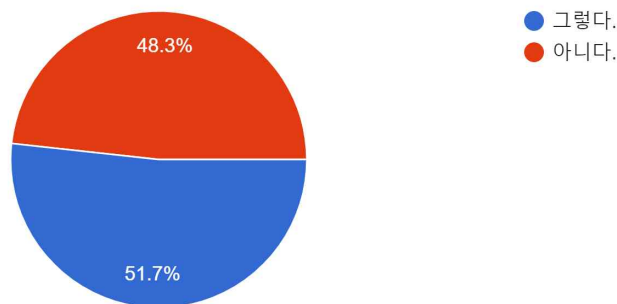
- 참여예산제에 관한 청소년들의 낮은 인지도와 ‘학업으로 인한 시간 부족’에 따른 낮은 참여 의향이 나타남. 고양시청소년의회가 2024년 4월 21일부터 5월 18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관내 청소년 145명 참여)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들어보지 않았음. 또한, 청소년 10명 중 8명은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알고 있지 않다고 응답함(별첨1). 이처럼 응답 청소년들이 참여예산제에 대해 낮은 인지도를 보였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제안에 참여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51.7%, ‘아니다’ 48.3%로 나타나 응답자의 반 이상이 사업제안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별첨2). 이에 따라 청소년의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접근성이 좋은 매체와 방식을 활용할 필요성이 인정됨.

귀하는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들어봤나요?  
응답 14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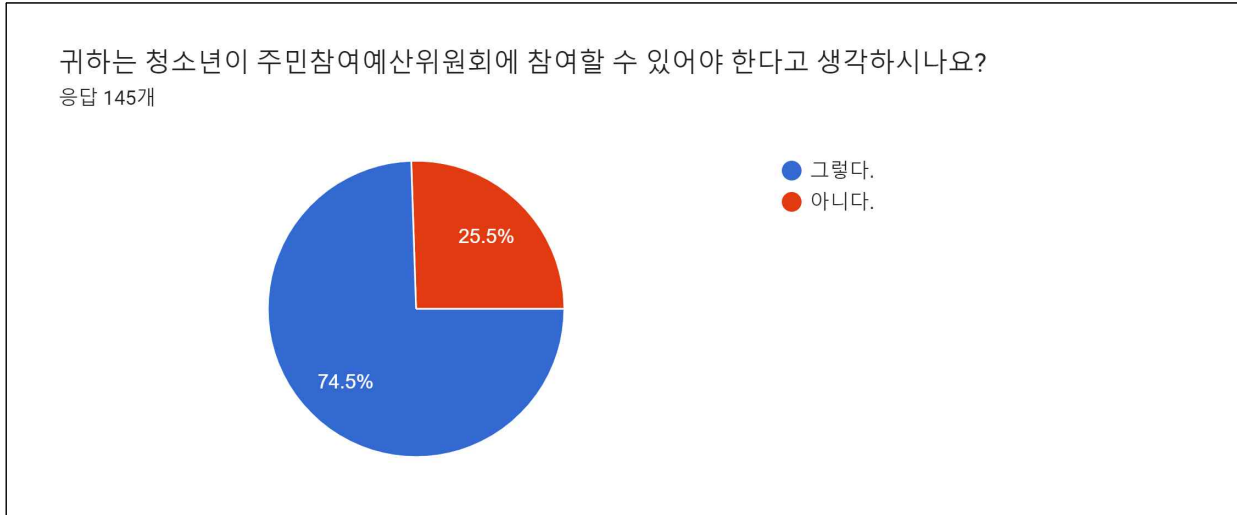
별첨1.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 인지도

귀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제안에 참여할 의향이 있나요?  
응답 145개



별첨2.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 참여 의향

- 아울러, 청소년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74.5%, ‘아니다’ 25.5%로 나타남. 수요자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 청소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보임(별첨3). 이에 따라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참여예산제 제도 개선을 통해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별첨3.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 참여에 대한 시민 의향

- 고양시와 달리 수원시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여주시, 오산시, 의정부시, 인천광역시, 창원시, 하남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운영조례 제23조와 24조에 따른다. 운영 효과로는 청소년위원회의 의견 제시를 통해 청소년들의 시각에서만 볼 수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여 해결할 수 있다.

**2. 사업목적(제안 취지)**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따르면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제19조(주민참여 확대 노력)에 따르면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로 시장은 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제도상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예산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설치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한 청소년 의견 수렴 보장이 필요함

**3. 사업대상(수혜자)**

- 고양특례시 청소년

**4. 현황 및 문제점(유관 정책 및 법률 / 기존 현황의 한계 등)**

- 현행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과 운영상 청소년의 참여 보장이 미비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요일이 흔히 공무원의 근무 일자(평일) 내에서 결정되어 학교 재학 청소년의 참여가 극히 제한적임. 또한, 관련 법령상 15세 미만 청소년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 5. 정책제안(사업내용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가. 고양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예산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확대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818호,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제안 / 별도 첨부)

#### 1) 고양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구성

- 가) 조례 개정을 통해 12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구성된 20명 이내의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설치
- 나) 공개모집(참여하고 싶은 청소년 누구나 예산교육 온라인 수료 후 신청 가능) 후 추천을 통해 위원 선정

#### 2) 고양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 활동 내용

- 가) 청소년 예산학교(청소년 눈높이 예산교육, 위원 활동에 요구되는 기본 소양교육 등)
- 나) 청소년 예산 사업제안서 작성 및 제출
- 다) 청소년 관련 정책 제안 및 청소년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 3) 고양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의 운영

- 가) 청소년 중 대부분이 학생인 것을 고려하여 평일이 아닌 토요일에 회의 진행
- 나) 위원의 수당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를 적용하여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지급하는 수당과 동일하게 지급
- 다)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여예산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추천

### 나.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청소년의 참여도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및 청소년 예산학교 운영 확대

#### 1) 청소년 예산학교 운영 횟수 확대

- 다양한 청소년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2) 학교별로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 주민참여예산제의 학생 접근성 강화

### 다.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청소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숏폼(Short-Form) 공모전 개최

#### 1) 전국 청소년 대상 고양시 주민참여예산 숏폼(Short-Form)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

- 가) 공모전 연간 1회 진행
- 나) 공모전 당선작을 주민참여예산 홍보 시 활용 (관내 학교 연계 홍보 추진)
- 다) 청소년의 시각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홍보함으로써 특화된 맞춤형 홍보 진행
- 라) 시상은 고양시장상을 수여하고, 대상은 100만원(1편), 최우수상은 50만원(1편), 우수상은 30만원(2편), 장려상은 10만원(2편)으로 상금 지급

## 6. 사업효과(기대효과)

- 청소년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기대효과로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청소년 관련 예산 책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청소년이 배제된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닌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현할 수 있다. 청소년 인권의 중요성이 회자되는 지금 청소년이 시의 주민으로서 주민참여 예산제에 참여하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 청소년이 시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인권이 더욱 존중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위원회의 의견 제시를 통해 청소년들의 시각에서만 볼 수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여 해결할 수 있다.

## 7. 소요예산(사업비)

- 청소년위원회 위원 수당  
- 산출내역: 100,000원 × 20명 × 20회 = 40,000,000원
- 예산학교 강사비 (고양시 강사수당 지급기준)  
- 산출내역: 250,000원 × 181개교(관내 학교수) = 45,250,000원
- 공모전 및 당선작 홍보비(포스터 제작, SNS 홍보 등)  
- 산출내역: 500,000원 × 2회 = 1,000,000원
- 공모전 당선작 부상금  
- 산출내역: 1,000,000원(대상) + 500,000원(최우수) + 600,000원(우수) + 200,000원(장려) = 2,300,000원

## 8. 첨부자료

-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818호,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818호,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04
----------	---------

발의연월일: 2024. 9. 21.

발의의원: 김태연 의원 등 4명

찬성의원: 김태연 의원 등 13명

## □ 제안이유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따르면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제19조(주민참여 확대 노력)에 따르면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로 시장은 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여야 함.
- 현행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과 운영상 청소년의 참여 보장이 미비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요일이 흔히 공무원의 근무 일자(평일) 내에서 결정되어 학교 재학 청소년의 참여가 극히 제한적임. 또한, 관련 법령상 15세 미만 청소년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 고양시와 달리 수원시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여주시, 오산시, 의정부시, 인천광역시, 창원시, 하남시에서도 운영하고 있음. 이로 인해 청소년위원회의 의견 제시를 통해 청소년들의 시각에서만 볼 수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여 해결할 수 있음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위원회 구성
-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및 청소년 예산학교 확대
- 고양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솟품 공모전 개최

**개정조례안**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예산수반사항** : 예상 소요 예산은 별첨한 정책 제안서 참조

**사전예고결과** : 해당사항 없음

**고양시 관련 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위원으로**”를 “**위원,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로 한다.

제7장의 제목 “**보칙**”을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제30조 및 제31조로 하고,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청소년 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임원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문화청소년, 북한이탈청소년, 장애청소년, 학교밖청소년 등 소수 청소년을 대표하는 위원을 전체위원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은 시민참여 예산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⑦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기능) 청소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

2. 청소년관련 사업의 현장실사,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 결과  
위원회 제출

3. 시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 처리  
제29조(회의)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  
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청소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청소년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심의·조정 시 자기명의 안건이 포함되었  
을 경우 그 심의·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때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  
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3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장 보칙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략)</p> <p>④ 위원은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한 <u>위원으로</u> 한다.</p> <p>제7장 보칙</p> <p style="margin-left: 20px;"><u>&lt;신 설&gt;</u></p>	<p>제23조(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위원,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으로</u> -----.</p> <p style="margin-left: 40px;"><u>제7장 주민참여예산</u> <u>청소년위원회</u></p> <p>제27조(설치 및 구성 등) ① <u>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청소년 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u></p> <p>② <u>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임원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문화 청소년, 북한이탈청소년, 장애 청소년, 학교밖청소년 등 소수 청소년을 대표하는 위원을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u></p> <p>③ <u>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u></p>

<신 설>

<신 설>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  
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은 시민참여 예산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기능) 청소년위원회는 다  
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정에서 청소년들  
의 의견 수렴

2. 청소년관련 사업의 현장실사,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  
의·조정 결과 위원회 제출

3. 시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사  
업에 대한 의견 제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하  
는 안건 처리

제29조(회의) ① 위원장은 주민참  
여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  
요한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회

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청소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청소년위원회에서 우선순위 심의·조정 시 자기명의 안건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심의·조정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때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8장 보칙

제30조 · 제31조 (현행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음)

<신 설>

제27조 · 제28조 (생략)